

SRI

정책리포트

사회복지시설의 부가가치세 이슈 검토 :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연주, 백정미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joanna1118@suwon.re.kr

도시경영연구실 전문연구위원, jmbaek@suwon.re.kr

요약

- 현재 수원시 14개 사회복지관은 총 수입의 1.4%~36.1%를 사업수입으로 총당하고 있으나, 사업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사회복지관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이슈와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부가가치세법 및 판례에 따르면, 공공성은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영장 및 헬스장 등을 통해 사업수입이 발생한 사회복지관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 납부의 책임은 위탁받은 운영법인이기 때문에 위탁을 준 수원시와 위탁체가 함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정책제안

- 부가가치세 사업의 고유번호증 변경
-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부가가치세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인력지원
- 사회복지관 사회교육의 단계적 폐지 검토 및 사회복지관의 역할 재정립
- 수원시 위탁기관의 부가가치세 실태 전면 검토 및 방안마련

KEYWORD _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사업수입, 부가가치세

수원시정연구원 수시보고서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수원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원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수원시는 3개 담당부서(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서 14개의 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노인복지관 6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가 있음
- 3종 사회복지관(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수영장 및 헬스장 등의 사회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수입이 발생함
 - 2019년 기준, 수원지역 14개 복지관의 사업수입은 총 수입의 1.4% ~ 36.1%를 차지함(한연주, 2020)
- 현재 수원시 내 복지관은 사업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수원시 1개 사회복지관도 세무서로부터 복지관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이행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았으나, 수원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이와 관련된 논쟁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중 규모가 큰 사회복지관을 타겟으로 분석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도 해당되는 내용임

2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과 판례 등을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세무사 2인의 자문과 사회복지관 중간관리자와의 집단인터뷰를 실시함
 -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률 및 판례 등을 분석함

- 부가가치세 관련 이슈와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세무사 2인에게 자문을 받음
- 사회복지관의 부가가치세 관련 이슈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II. 사회복지관의 부가가치세 관련 이슈

1 사회복지관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가

1)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대상

-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 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임(국세청, 2020)
 -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는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함하는 재화 및 모든 의무와 기타 행위가 과세대상이 됨
 -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의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함

[표 1] 부가가치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기준

구분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에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세외수입, 도소매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됨

[표 2]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세외수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를 받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집종재산의 임대, 각종 전시실 대관, 강등 등의 대관¹, 주차장 등의 임대, 매점·식당·각종 판매업 등의 임대 등 - 도소매업: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직영하는 자판기의 경우 -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무술도장, 단전호흡시설,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등), 수영장 운영업 (본래 경기장용이 아닌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으로 건립한 경우), 볼링장, 당구장 운영업,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 등

2) 사회복지관의 부가가치세 대상여부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중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 등의 일부 사업은 최소한의 실비이용료를 수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교육문화사업: 아동·청소년 사회교육(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내용지도, 예·체능 등 각종 기능교육), 성인기능교실(자격취득 및 기능습득, 교양강좌), 노인여가·문화(노인 건강운동교실, 여가·교육 교양 프로그램, 경로당 지원사업), 문화복지사업(여가·오락프로그램, 주민문화행사)(보건복지부, 2019).
- 현재 수원시에는 14개(종합복지관 6개소, 노인복지관 6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 시설들은 교육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수영장, 헬스장 등의 여가문화시설을 운영 중에 있음

1 강당 등의 대관이 계속적 반복적일 경우 대관용 시설의 대관은 무조건 과세임

[표 3] 수원시 사회복지관의 수영장 및 헬스장 운영 현황

구분	기관명	
수영장	종합복지관(1)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3)	• 팔달노인복지관, 버드내노인복지관, 서호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1)	•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헬스장	종합복지관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6)	• SK청솔노인복지관, 팔달노인복지관, 버드내노인복지관, 서호노인복지관, 광고노인복지관, 밤밭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0)	

주: 장애인복지관은 재활스포츠센터로 운영되고 있음

-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헬스장은 복지관 이용대상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일반주민에게도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일정한 실비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함
-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4조 이하에 따라 과세와 면세 여부가 판단되는데, 사회복지관은 수영장, 헬스장, 대관료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됨
 - 수영장 및 헬스장 이외에도 시설대관, 교육문화사업으로 사업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복지관 내 카페, 자판기 등에서도 사업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를 현금으로만 받거나 복지관 내 사업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임
 - 수원시 14개 사회복지관 중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하는 일부 복지관은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미 해당구청에 체육시설로 등록했기 때문에 [표 2]에 대상에도 해당됨. 즉, 복지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복지관과 체육시설에서 모순적인 입장임
 - ※ 헬스장 등을 구청의 체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위법사항으로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도 있음
-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공공성은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국가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익도 부가가치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일정한 경우 국가 등이 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어 공공성 등을 별도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에 따라 거래내용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복지관의 수영장 운영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45조1호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그 고 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호의 아마추어 운동경기에도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도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납부의무를 지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8항에 따르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이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등은 공익으로 인정되지 않음

[표 4]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2020.2.11] [[시행일 2020.7.1]]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중략)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제10항과 같이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등은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유목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음

[표 5] 공익 관련 법령

구분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판례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은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으로 간주함

- 2012년 청소년 수련관과 세무서와의 행정소송 이후,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수련관은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고 있음. 단, 당시에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역으로서의 수영장 수입은 면세이지만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은 과세 대상임

[표 6] 사회복지시설의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p>판례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청소년 외의 자에게 수련시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숙박·음식용역 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상임(서삼46015-10340, 2002.02.08.)
<p>판례 2. 노인복지관 내 체육시설, 미용실, 네일숍, 식당 등 노인편의시설과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 가치세 대상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 내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재화 및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였으며, 이용료가 실비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대상임(감사원 심사결정 2017-심사-36·54 병합)

-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헬스장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이기 때문에 이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사회복지관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처리문제,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부 시 소요되는 예산의 출처를 지정하는 문제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해당할 때에만 면제가 되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사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임
 - 수영장 운영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수익금액에 대해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음.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의해 법인세 전액 면제 가능함

2 사회복지관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가

- 사회복지시설의 수영장 운영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이기 때문에 이용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수원지역 내 사회복지관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5년마다 세금고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5년 전 사회복지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고지 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위탁한 수월시가 납부해야 하는지,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이 납부해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함
- 2019년 대법원 판결(2016두 60287)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의무자는 위탁을 준 지자체가 아닌 위탁받은 운영법인이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위탁기관들은 이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수원시에서는 대관료 등 수익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시에서 직접 납부하고 있으며, 예로 수원시 위탁시설 중 ‘근골격 건강센터’는 2019년 부가가치세 환급금(1,384건)이 발생하여 세외수입 처리함

[표 7] 부가가치세 납부 주체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602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489]	
사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면서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수영장 이용료 등과 관련하여 2007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합계 453,719,360원을 납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납부액의 지급을 요청함
판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을 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거래당사자인 위 단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이 거래당사자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III. 사회복지관의 부가가치세 관련 정책적 대안

1 부가가치세 사업의 고유번호증 변경

-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익은 대부분 결산에 포함하되 세무적인 목적으로 시설장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운영법인의 수익사업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의 경우 카페를 운영하는 등의 사업단위를 운영하는 경우 (예: 노인복지관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는 해당 사업(카페)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사업이므로 복지관의 공간에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변경하여 사업자 등록증으로 갱신하여야 함

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부가가치세는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즉, 사회복지시설의 수영장 운영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이기 때문에 이용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료는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조(사용자 및 사용료)와 별표 2에 근거하고 있는데 장기간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운영적 어려움이 발생함
- 이에 복지관 수영장, 헬스장 등 실비이용료 수입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세비용을 부과한 실비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함

[표 8]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관련 조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조(사용자 및 사용료)				
①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는 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노인전문요양원의 입소자는 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정한다.(개정 2013. 03. 28)				
②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시설 및 부대시설은 생략)				
수영장				
구 분	성 인	청소년	어린이 및 영유아	비 고
기본료(1인1일)	3,000원	2,500원	2,000원	1회 사용료
월 사용료	강 습	55,000원	45,000원	주3회 기준
	자유이용	50,000원	40,000원	
헬스장				
구 분	성 인	청소년 및 어린이	비 고	
기본료(1인/일)	2,000원	1,500원	1회 사용료	
월 사용료(1인/월)	45,000원	40,000원	주6회(월~토)	
③ 사용에 따른 수익금 등은 수원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납입하거나 운영자의 시설운영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인력지원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비용처리에 따른 공제 및 환급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금 관련 교육 실시
- 부가가치세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및 인력지원
 - 위탁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수탁기관의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후 정산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2017)
 - 민간위탁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관리비 등을 명확히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세무업무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사회복지관의 회계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이를 처리하기는 불가능함
 -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부가가치세 등 세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 세무업무 수행 위한 신규 인력 채용, 2) 외부 세무사 의뢰 등을 위한 인력 및 업무지원이 필요함

4 사회복지관 사회교육의 단계적 폐지 검토 및 사회복지관의 역할 재정립

- 본 연구에서 앞서 제안한 정책적 대안은 단기적인 대안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회복지관이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장,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즉, 복지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수원지역의 사회복지관은 초기 세팅부터 부족한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 지역보다 많은 수영장을 설치함.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등이 발생하여 사회복지관을 개방하지 않더라도 수영장 등의 운영비는 고정비용으로 지출되어 복지관의 운영적자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시설의 빠른 노후화, 다수의 민원과 복지관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됨.

[표 8] 서울, 경기도, 수원시의 수영장 있는 복지관 현황(2020.04.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경기도		수원시	
	복지관 수	수영장 있는 복지관 수	복지관 수	수영장 있는 복지관 수	복지관 수	수영장 있는 복지관 수
사회복지관	98	7	102	5	6	1
노인복지관	52	0	45	5	6	3

자료: 수원시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 사회복지관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르게 대응해야 함을 내부적으로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삭감되는 보조비로 인해 사업수입을 포기할 수 없는 악순환적인 구조임
- 따라서 일반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등의 사회교육을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여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개편하는 것이 타당함

5 수원시 위탁기관의 부가가치세 실태 전면 검토 및 방안마련

-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이슈는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수원시 위탁시설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 따라 민감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앞으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즉 사회복지관 이외에도 수원시 위탁시설들도 함께 이에 대한 전면 검토 및 방안마련이 필요함



발행인 | 최병대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031.220.8001

www.suwon.re.kr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